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11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6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(안 제1조)
- 나. ‘사회복지사업’, ‘사회복지기관’, ‘사회복지사 등’ 용어를 정의함.(안 제2조)
- 다.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함.(안 제3조)
- 라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.(안 제4조)
- 마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수준의 향상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5조)
- 바.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함.(안 6조)
- 사.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규정함.(안 제7조 ~ 제14조)
- 아.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도록 함.(안 제15조)

3. 조 례 안 : 따로 붙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의 2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2. 4. 27.~ 5. 17.) 결과 : 의견 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2. “사회복지기관”이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,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.
3.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군수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

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
2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
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복지기관의 장
2.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
3. 관련 업무 담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5급 이상 공무원
4.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임명직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.

⑤ 위원회는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실무위원회의 구성·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

정한다.

제12조(해촉 등)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3. 위원 본인이 해촉이나 임명 취소를 원하는 경우

제13조(비밀누설 금지)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

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